



제422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업신용조회업 허가요건 완화 등〉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06712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허가요건 완화	3
2. 신용정보업 예비허가 제도 도입	19
3.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부수업무 확대	22
4. 신용평가체계 검증 대상에 기업신용평가모형 포함	26
5. 미납·환급 과징금 가산금 요율의 대통령령 위임	29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정부제출

나. 제 안 일 : 2024. 12. 19.

다. 회 부 일 : 2024. 1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업신용조회업의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신용조회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에 대한 예비허가제도를 도입하여 본허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두는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개편하여 기업신용평가체계에 관한 외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고정되어 있는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시중 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허가요건 완화(안 제5조제3항)

금융기관이 50퍼센트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의 자뿐만 아니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용정보업 등의 예비허가제도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본허가에 앞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개편 (안 제2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관련 심의에 한정되어 있는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개편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관련 심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함.

라.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 정비(안 제42조의2제7항)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정요율(연 100분의 6)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중 금리 추세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허가요건 완화

□ 개정안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도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기 위한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 행	개정안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② (생략)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u>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u> 을 하려는 자는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자로 한정한다.	③ ----- ----- ----- . ---- <u>기술신용평가업무</u>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은 신용정보업¹⁾을 ① 개인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²⁾ 포함),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③ 기업신용조회업, ④ 신용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신용정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개인신용평가업 /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 다. 기업신용조회업 / 라. 신용조사업

2) 금융거래 관련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의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조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③ 기업신용조회업은 다시 1) 기업정보조회업무, 2)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3) 기술신용평가업무로 구성됨³⁾.

[표 1]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분류

신용정보회사 (제2조제5호)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CB) ⁴⁾ (제2조제8호)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제5조) 포함)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제2조제8호의2)	
	기업신용조회회사 (제2조제8호의3)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기술신용평가업무
	신용조사회사 (제2조제9호)	

○ 한편 「신용정보법」은 위의 각 업무별로 허가 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기업신용조회업의 경우 ① 금융기관 등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②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한국무역보험공사 등, ③ 신용정보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④ 특허법인·회계법인, ⑤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의3. "기업신용조회업"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외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합·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행위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기업신용등급을 생성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 및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한 다음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CB는 Credit Bureau의 약자로, 신용평가를 의미함.

등이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이 중 ⑤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는 기업신용
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기 위한 기업신용조
회업 허가를 받을 수 없음⁵⁾.

[표 2] 기업신용조회업 허가 대상

대상	기업신용조회업		
	신용정보조회	신용등급제공	기술신용평가
금융기관 등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신용정보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회계법인·특허법인	○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	×	×

- 그 결과 공적기금(신용보증기금 등)이나 특수법인이 아닌 경우
에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위한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
아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의 50% 이상 출
자가 필요한 상황임.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생 략)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신용정보업이나 채권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자
로 한정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4. 기술신용평가업무의 특성,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또한, 금융회사 등의 출자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유지하여야 하고, 허가 이후 사업자가 출자 요건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신용정보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사회사는 출자의무 유지 조건을 적용받지 않고,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포함한 그 외 신용정보회사는 33% 이상의 출자 지분을 유지하여야 함⁶⁾.

[표 3] 신용정보업 금융회사 등 출자요건 및 유지의무

구분		금융회사 등 출자요건	출자요건 유지의무	
			미상장	상장
신용 정보 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50%	50%	33%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50%	50%	33%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정보조회업무	-	-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50%	33%
		기술신용평가업무	50%	33%
	신용조사회사	50%	50%	-

- 이러한 금융회사 등의 출자의무는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1995년 제정 당시에는 신용정보업 단일체계가 규정되어 신용정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2. 제5조제1항제1호·제2항제4호·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보업자가 신용조사, 신용조회, 채권추심업무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었으며, 금융기관 출자요건은 100%(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만 허가)였음.⁷⁾

- 1997년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 신용조회, 채권추심업무 별로 나누어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금융기관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짐.⁸⁾

○ 2001년에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금융기관 출자요건 유지의무를 삭제하였음.⁹⁾

- 다만, 2015년에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새롭게 증권시장에 상장한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금융기관이 33% 이상 출자를 유지할 의무¹⁰⁾를 재부과하였음.

○ 2024년에는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사회사¹¹⁾에 대해 금융기관 등의 출자 유지 의무를 폐지함.

7) 당시 정부가 제출한 의안원문에는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신용정보업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으로서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이루어짐(「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정부)(140881) 심사보고서).

8) 당시 신용정보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 등 5개 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던 신용정보업 허가요건을 금융기관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완화하였음(「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150568) 검토보고).

9) 상장·등록된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상장·등록유지를 위한 여러 준칙의무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주식의 소유분산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출자요건을 삭제하였음(「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160545) 검토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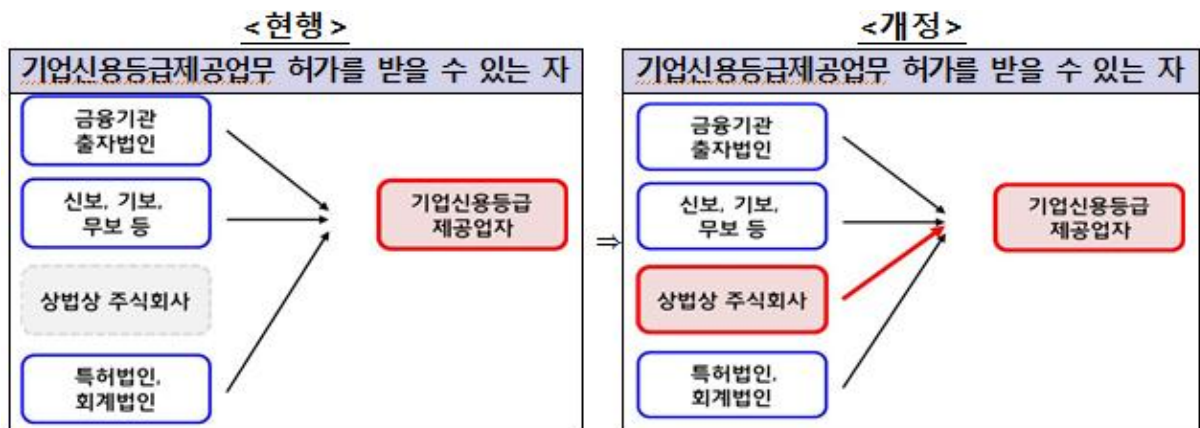
10) 개정안 부칙에서 이러한 의무는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증권시장에 상장된 신용정보회사는 없음.

11) 신용정보회사 외에는 채권추심회사도 포함

□ 정부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기 위한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는 입장임.

[그림 1] 개정안에 따른 변화



(자료: 금융위원회)

○ 참고로, 현재¹²⁾ 기업신용등급 제공업무를 하기 위해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는 총 9개사임.

- 이 중 정부가 출자한 공적기금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제외하면, 민간 회사는 총 7개사임.

12) 2025.2. 기준

[표 3] 기업신용등급 제공업무를 위한 기업신용조회업 허가 현황

·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테크핀레이팅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개정안과 같이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할 경우 기존 기업CB사업자¹³⁾¹⁴⁾와 차별화된 데이터와 신용평가 모형이 도입되어 동 분야에 대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21년 기준¹⁵⁾으로 전체 신용정보업 산업의 시장집중도를 살펴 보면, 과거 10년 간 매년 시장점유율 1위 CB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중이 50%를 초과하고,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75%를 초과하는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¹⁶⁾가 존재하는 ‘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추정되고 있음.

- 기업CB업무(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시장의 경우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초과하지는 않으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75%를 초과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음.

13)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위한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의미

14) CB는 Credit Bureau의 약자로, 신용평가를 의미함.

15) 이하 시장집중도 관련 내용은 「신용정보업 경쟁도 평가 결과보고서」,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금융위원회 자문기구), 2022.10.을 참조함.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표 4] CB 시장의 시장집중도(CR1, CR3)

연도	총매출		기업CB업무 매출	
	CR1 ¹⁾	CR3 ²⁾	CR1	CR3
2012	75.2	100	-	100
2013	70	93.1	48	95.6
2014	74.1	94	46.1	94.9
2015	75.5	95.7	43.6	94.3
2016	69.5	90.4	36	80.1
2017	58.6	84.1	36.4	79.8
2018	56.9	82.1	36.1	78.4
2019	54.1	81.6	38.5	78.1
2020	52.9	81.6	42.3	78.9
2021	51.5	81.5	45.2	79.6

주1: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 / 주2: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자료: 금융위원회)

○ 기업CB업무의 경우 2010년 6번째 사업자가 신용조회업¹⁷⁾ 허가를 받은 이후 신규사업자가 등장하지 않고 있었으나, 2020년 신용보증기금, 2024년 기술보증기금과 민간업체 1개사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¹⁸⁾하였다.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가 출자한 공적기금으로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라 기업CB업무를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민간업체의 경우 회계법인 또는 특허법인이 아닌 이상 금융기관 등이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다는 점¹⁹⁾에서 향후 새로운 기업CB업무를 위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17) 현행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업 구분은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이전에는 개인·기업 신용조회업무를 모두 '신용조회업'으로 허가받았음.

18) 신용보증기금은 2020.3.18., 기술보증기금은 2024.10.7., 민간업체 1개사(테크핀레이팅스)는 2024.5.31.에 각각 허가를 받음.

19) 2024년 신규 진입한 민간업체의 경우 금융기관과 출자를 통해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기업CB업무를 위한 허가요건을 완화할 경우 신규 민간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기업CB업무 시장의 집중도가 완화되고 경쟁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2022년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²⁰⁾의 ‘신용정보업 경쟁도 평가 결과보고서’에서는 기업CB업무 시장의 추가 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 그 근거로는, ① 기업CB의 경우 개인CB와 비교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약하며 정보활용에 대해 사회적 저항도 낮다는 점, ② 개인신용평가와 달리 기업은 산업별·규모별 특성에 따른 편차가 크고, 각 기업 특성별 평가역량을 갖춘 CB사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개인CB보다 더 다양한 CB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시함.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CB업무 시장의 한계, 이해관계자 등 시장진출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신용정보협회²¹⁾의 의견이 제출되었음.

20)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임.

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신용정보협회)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사이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신용정보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신용정보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2.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
3. 신용정보 관련 민원의 상담·처리

3의2.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첫째, 신용정보협회는 기업신용등급제공 시장은 민간과 공공을 합하여 1천억원을 하회하는 소규모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기존 CB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 공공 영역에서는 기업이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²²⁾²³⁾ 및 그 하위법령²⁴⁾에 따라 기업신용등급제공회사로부터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민간 기업(대기업)에서도 협력업체²⁵⁾ 등록 신청을 받거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위와 같은 기업신용등급 결과를 요구하고 있음.

④ 신용정보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4)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5항 본문중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별표] 주2) 나.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25) 원사업자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 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 사업자도 포함

[표 5] 기업신용등급제공 관련 공공·민간 시장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공공평가 시장	337	344	399	439
민간평가 시장	316	328	350	365
총 계	653	672	749	804

(자료: 신용정보협회)

○ 둘째, 신용정보협회는 특정 업종의 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있고, 이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자가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기업CB업무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경우, 기업CB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도 제시하였음

- 예를 들어, 공제조합²⁶⁾의 경우 조합원에 대한 보증 또는 융자를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는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기업CB업무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집중도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와, 현재 기업CB업무 시장의 상황 및 이해 상충 우려 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6) 공제조합은 일반적으로 개별법에 따라 설립하며, 특정 업종 사업자(조합원)의 출자로 성립하게 됨. 공제조합은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한편, 이상의 논의 결과 개정안을 수용하여 ‘기업신용등급제공 업무를 위한 기업신용조회업’의 진입요건을 완화하려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개정안에 따라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위한 기업신용조회업의 진입요건이 완화될 경우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²⁷⁾²⁸⁾의 진입요건도 함께 완화되는 효과가 예상됨.

-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②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③ 신용카드업자, ④ 금융기관 등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⑤ 신용정보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규정²⁹⁾하고 있음.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 또는 특허·회계법인을 제외하면 금융기관 등 또는 신용정보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의 경우에만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음.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28)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에 관해서는 3. 항목에서 설명함.

2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다)
2.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 4.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 5. 제1항제6호에 따른 자

-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 또는 신용정보회사가 50% 이상 출자하거나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공적 기금(신용보증기금 등)만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³⁰⁾가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위한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경우 이들 회사가 금융기관 등의 50% 이상 출자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허가도 받을 수 있게 되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허가 대상 요건도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됨.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³⁰⁾ 중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도 영위토록 하는 것이 현행 법률의 입법 의도인 점을 감안하여 수정 없이 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입장임.
- 따라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의 진입규제를 완화할 경우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진입규제도 함께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위한 기업신용조회업’의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맞추어,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회사

30) 입법예고 기간: 2024.9.4. ~ 2024.10.14.

등의 출자 요건 유지의무³¹⁾를 완화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금융회사 등의 출자 요건 유지의무는 2001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가, 2015년 다시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법 개정 이후 신규로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33% 이상 출자지분을 유지하도록 한 제도임.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제외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민간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총 7개사로 이 중 4개사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황임.
 -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4개사 모두 2015년 「신용정보법」 개정 전에 증권시장에 상장되면서 금융회사 등의 출자요건 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³²⁾.

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2. 제5조제1항제1호·제2항제4호·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32) 참고로, 4개사 중 1개사(이크레더블)는 금융회사 등의 출자가 아닌 신용정보회사의 출자를 통해 설립된 법인으로, 금융회사 등의 출자 유지 의무를 적용받지 않음.

[표 6] 기업신용등급제공 민간 기업신용조회회사 현황³³⁾

회사명	설립일	허가일	상장여부 (상장일)	비고
나이스평가정보	1985.2.28.	1995.7.12.	O (2000.5.16.)	금융회사 출자지분 유지의무 미적용
SCI평가정보	1992.4.23.	1999.3.4.	O (1999.12.7.)	상동
나이스디앤비	2002.10.12.	2005.7.22.	O (2011.12.22.)	상동
이크레더블	2001.8.6.	2010.9.1.	O (2008.10.24.)	상동 ¹⁾
코리아크레딧뷰로 (KCB)	2005.2.22.	2005.6.24.	X	-
한국평가데이터 (K0data, 舊 KED)	2005.2.22.	2005.3.25.	X	-
테크핀레이팅스	2022.7.5.	2024.5.29.	X	-

주1: 신용정보회사가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여 법 개정과 상관없이 미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개정안에 따라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위한 기업신용조회업’
진입규제가 완화되어 금융회사 등의 출자 없이 ‘「상법」 상 주
식회사’의 요건만 갖추어 허가를 받게 되면, 해당 신규 회사는
금융회사 등의 출자 유지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됨.
- 반면, 기존에 금융회사 등의 출자 요건을 적용받고 허가를 받
았으나, 아직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향
후 증권시장에 상장하더라도 최소 33% 이상의 금융회사 등의
출자지분을 유지해야 함.
- 2001년에 상장한 회사에 대해 금융회사 등의 출자 유지 의무를
삭제한 것은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여
러 준칙의무가 존재하여 이를 통해 주식의 소유분산이 이루어

33) 상세 현황은 참고자료 1 참조

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³⁴⁾이라는 점, 2015년 이후 상장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33% 이상 출자 유지의무를 재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 신규 진입하는 회사 외에 기존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금융회사 등의 출자요건 유지의무를 계속 부과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금융위원회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 회사에 한하여³⁵⁾ 기존 금융회사 등의 출자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이를 유지할 의무를 더 이상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3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160545) 검토보고

35)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

2. 신용정보업 예비허가 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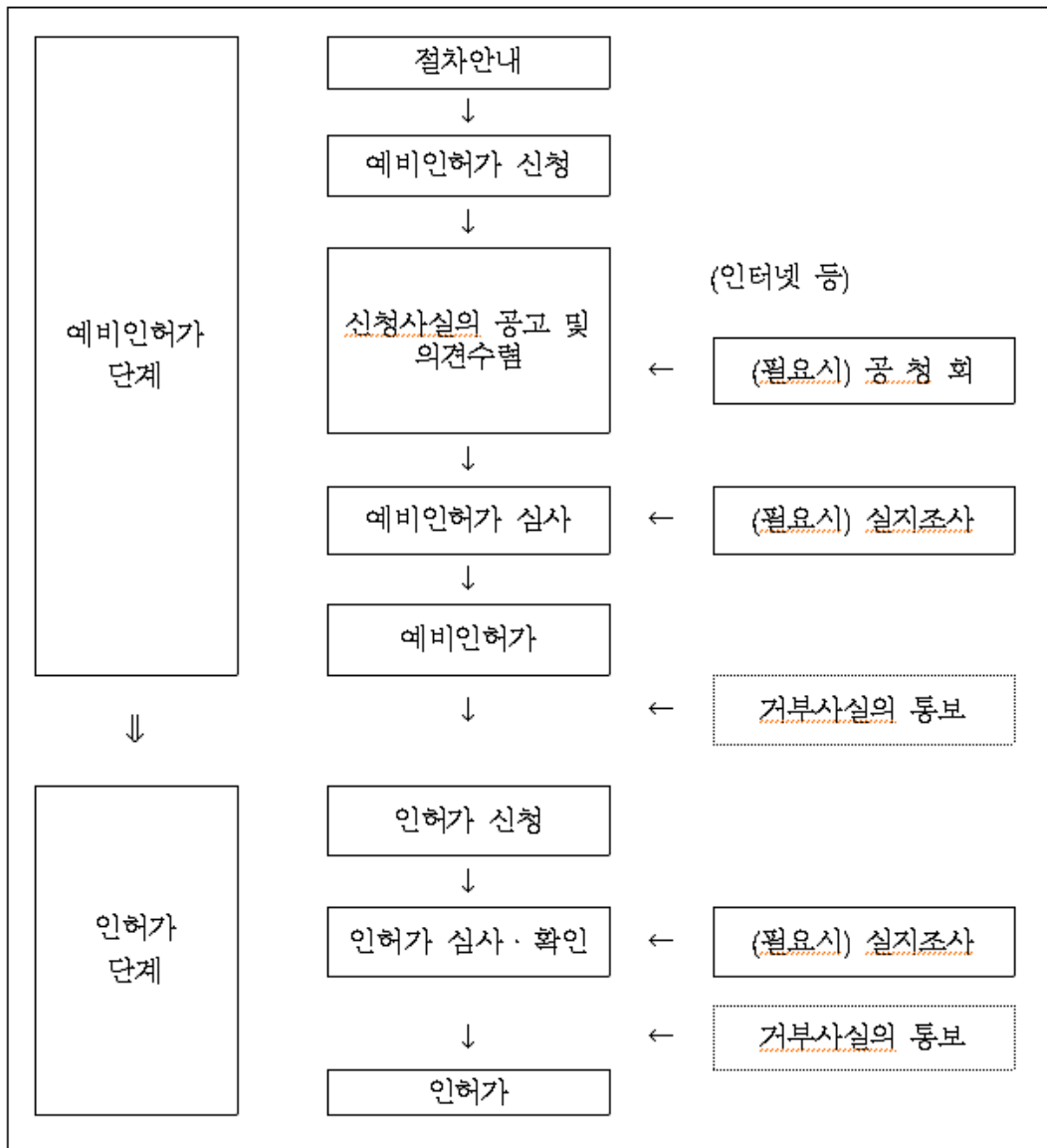
□ 개정안은 신용정보업의 허가 과정에서 예비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6조의2(예비허가) ①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의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5조 및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제5조 및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현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은 「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와 관련한 예비허가 제도³⁶⁾를 규정하고 있음.

36)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의 절차) ⑨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⑪ 예비허가 신청 및 심사 절차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는 각각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로 본다.

[표 7] 신용정보업 허가 절차(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1)



- 예비허가란 허가기준의 일부만 갖추고, 나머지 허가기준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제시하여 예비허가를 받은 후, 일정한 기간 내에 허가기준을 모두 갖추어 본 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³⁷⁾함.

37) 법제처, 2024 법령입안심사기준

- 이러한 예비허가 제도는, 신청자가 허가기준을 갖추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기간이 걸리는 경우, 허가를 신청했다가 막상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많은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 개정안은 이와 같이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던 예비허가 제도를 「신용정보법」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였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금융 관련 법률 중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³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예비허가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38)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의2(예비허가)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입법례는 [참고자료 2] 참조

3.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부수업무 확대

- 개정안은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의 종류로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현 행	개정안
제11조의2(부수업무) ①·② (생략)	제11조의2(부수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그 밖에 <u>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u>
④ ~ ⑨ (생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³⁹⁾은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었음.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도입 배경을 보면, 기존에는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성을

3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반영한 평가체계가 부재하여, 금융회사가 신용평가에 기초하기보다는 보증·담보에 의존하여 대출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었음.

- 그 결과 개인사업자 중 실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보다는 담보확보가 용이한 부동산·임대업자 등에게 대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개인신용평가업과 별도로 규정하여,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신용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자금배분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한편, 「신용정보법」 제11조의2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경우 제11조의2 제3항 각 호에서 부수업무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으나, 다른 신용정보회사와 달리 법에서 나열한 범위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대한 위임 조항이 부재한 상황임⁴⁰⁾.

4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부수업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신용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 개인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조사회사 등 다른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부수업무를 법률에서 나열한 이후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부수업무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경우에도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신용정보법」상 겸영업무⁴¹⁾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해당 개인사업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사업자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④ 기업신용조회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부수업무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정한다.

1.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3.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4.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기업신용등급 산출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신용조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2. 사업체 및 사업장의 현황조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겸영업무)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 2. 채권추심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위임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부수업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다른 신용정보회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 아울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만을 전담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부수업무가 「신용정보법」에 나열된 범위로 한정되는 반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겸영으로 하고 있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카드업자 등의 경우 각 원 허가업무에 따른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민간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11개사 중 4개사는 신용카드업자이고, 6개사는 개인신용평가업 또는 기업신용조회업자이며,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만을 전담하는 회사는 1개사임.

4. 신용평가체계 검증 대상에 기업신용평가모형 포함

□ 개정안은 신용평가체계 검증 대상에 기업신용평가모형을 포함하
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 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3의2. 제26조의3에 따른 <u>개인신용평 가체계</u> 검증위원회의 운영 4. 삭 제 5.·6. (생 략)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 무)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 <u>신용평가체계</u> ----- 5.·6.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 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u>개인신용평가체계</u> 검증위원회를 둔 다. 1. <u>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 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의 평 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 의</u> 2. <u>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에 관한 심의</u> 3. (생 략) ② <u>개인신용평가체계</u>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의3(<u>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u>) ① ----- ----- <u>신용평가체계</u> ----- ---. 1. <u>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 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등급제공 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이 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등”이 라 한다)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 정보에 관한 심의</u> 2. <u>신용평가회사등</u> ----- ----- 3. (현행과 같음) ② <u>신용평가체계</u> ----- ----- -----.

③ <u>개인신용평가체계</u> 검증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u>개인신용평가회사등</u>에 알려야 한다.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u>개인신용평가체계</u>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의 제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u>신용평가체계</u> ----- ----- ----- ----- <u>신용평가회사등</u>----- -----. ④ (현행과 같음) ⑤ ----- <u>신용평가체계</u> ----- ----- ----- ----- -----.
---	---

□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⁴²⁾⁴³⁾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두고,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을 심의⁴⁴⁾하고 있음.

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①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43) 현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 받은 기관은 한국신용정보원임.

44) 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둔다.

1.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2.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에 관한 심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검증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이 기초정보의 수집 평가모형 설계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개정안은 기존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변경하고, 검증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기존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존 기업신용평가모형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아울러, 개정안에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새롭게 진입하는 사업자의 평가모형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됨.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의 제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미납·환급 과징금 가산금 요율의 대통령령 위임

- 개정안은 미납 과징금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환급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할 때의 요율을 현행 연 6%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현 행	개정안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 ④ (생 략)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u>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u>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 ----- ----- <u>날</u> <u>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u>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u>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u> 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 ----- ----- <u>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u> -----.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금융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45)가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45)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

하면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가산금을 징수(미납 가산금) 또는 지급(환급 가산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용정보법」은 이러한 미납 가산금을 징수하거나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요율을 각각 연 6%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6%에 해당하는 (미납) 가산금을 징수하게 됨.

- 한편, 법원 판결 등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6%에 해당하는 환급 가산금을 지급해야함.

□ 지난 2021년 금융위원회는 감사원으로부터 이 중 「신용정보법」에 따른 환급 가산금 요율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환급 가산금은 국가가 과징금 등을 부과·징수하였다가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금전을 반환할 경우 그

호위원회가 관리·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로 지급되는 것임.

- 이에 따라 환급 가산금의 요율은 시중금리와 연동될 필요가 있으나, 「신용정보법」은 이를 연 6%로 고정하고 있어 환급 대상자에게 금리차이로 인한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게 됨.

- 감사원은 이러한 규정을 정비하여 환급 가산금이 시중금리와 연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였음.

○ 참고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과징금에 대한 환급 가산금 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⁴⁶⁾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⁴⁷⁾에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⁴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요율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기본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연 3.5%임.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6조(과징금 환급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 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8)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 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 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신용정보법」 상 환급 가산금 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시장금리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금융 관련 법률에서 이와 유사하게 규정⁴⁹⁾하고 있다는 점,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미납 가산금에 대해서도 그 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서 미납 가산금에 대한 요율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들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입장임.

- 금융 관련 법률의 사례를 보면, 「은행법」⁵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⁵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⁵²⁾ 등에서 미납 가산금을 대통령령에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3(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434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0) 「은행법」 제65조의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26조의5(가산금) 법 제65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2조(가산금) 법 제4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과징금)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위임하고 있으며, 각 대통령령에서는 현행 「신용정보법」 상
요율인 6%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미납 가산금을 규정한 입법례에 따라 이를 법에 직접
규정하는 사례⁵³⁾, 상한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례⁵⁴⁾
등이 있으므로, 금융 관련 법률 간의 미납 가산금 요율에 대
한 정합성, 다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통령령
에 위임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가산금) 법 제14조의
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채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53)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⑦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
지 못한다.

5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3조(과징금 징수 및 채납처분
등)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
음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참고자료 1】

민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관련 기업신용조회회사 현황

회사명	주요주주(지분율)	설립 및 라이선스 취득일	상장여부 (상장일)
나이스평가정보	NICE홀딩스(43.43), 미래에셋자산운용(1.06), 현대캐피탈(2.27), 삼성카드(1.53)	(설립) 1985.2.28. (조사) 1995.7.12. (조회) 1995.7.12. (추심) 1995.7.12. * 2020.7.22.허가간주	○ (2000.5.16.)
SCI평가정보	진원홀딩스컴퍼니(21.11), 제이피어반디(18.02), 제이원홀딩스(17.29)	(설립) 1992.04.23. (조사) 1992.7.10. (조회) 1999.3.4. (추심) 1998.5.08. * 2020.07.22.허가간주	○ (1999.12.7.)
나이스디앤비	NICE홀딩스(34.97), Phillip Capital Pte Ltd(26.62) Tokyo Shoko Research, Ltd(9.42) D&B International Ltd(3.25)	(설립) 2002.10.12. (조사) 2005.7.22. (조회) 2005.7.22. (추심) - * 2020.07.22.허가간주	○ (2011.12.22.)
이크레더블	한국기업평가(67.77), 피델리티 매니지먼트(6.46)	(설립) 2001.8.06. (조회) 2010.9.1. * 2020.07.22.허가간주	○ (2008.10.24.)
코리아크레딧뷰 로 (KCB)	한국기업평가(10.99), 코리아크레딧뷰로(9.21), 서울보증보험(9.0), 국민·농협·하나· 우리은행(각 9.0) 신한은행(4.5), 신한카드(4.5), 삼성카드(3.4), 삼성생명(2.8), 삼성화재(2.8), 현대캐피탈(7.0) 등	(설립) 2005.2.22. (조사) 2005.6.24. (조회) 2005.6.24. (추심) - * 2020.7.22.허가간주	X
한국평가데이터 (K0data, 舊 KED)	신용보증기금(15.0), 기술보증기금(8.96), 한국산업·중소기업·농협·국민·신한· 우리·하나은행(각 8.96)	(설립) 2005.2.22. (조사) 2005.3.25. (조회) 2005.3.25. * 2020.7.22.허가간주	X
테크핀레이팅스	신한은행(45.0), 서울보증보험(9.0), 더존비즈온(46.0)	(설립) 2022.7.5. (조회) 2024.5.29.	X

(자료: 금융위원회)

【참고자료 2】 : 금융 관련 법률 예비허가 입법례

개정안
제6조의2(예비허가) ①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의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5조 및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제5조 및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4(예비허가) ①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허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 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허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예비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허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업법

- 제7조(예비허가) ①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 ⑤ 예비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8조(예비허가) ①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제1항·제2항·제6항을 준용한다.

, 「,

문 의 처
02)6788-5106